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료 용기 · 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 표시
의무화 등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5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 표시 의무화	2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	7
※ 참고자료	13
1.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3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1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 표시 의무화

개정안은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그 용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및 제91조제3호의6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u> <u>1. 도료의 용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u> <u>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u>

현행	개정안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5. (생략) <u><신설></u> 4. ~ 13. (생략)	3. <u>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조 또는 수입일자</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91조(벌칙) ----- ----- ----- -----.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u>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도료의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u> 4.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료(塗料)²⁾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 법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³⁾의 함유기준⁴⁾을 정하도록 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판매하는 자는 그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⁵⁾에서는 도료 용기에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도료 제조사와 유성도료 제조·공급, 사용 근절을 위한 자발적 협약⁶⁾을 체결 하였으나, 협약과 다르게 자동차보수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유성 도료를 공업용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용기에 표시된 제조일을 실제 도료

2) 도료(塗料):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씌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표준국어대사전)

3)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참고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5)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6) 국내 주요 자동차보수용 도료 제조 및 수입사와 자동차보수용 도료(상도-basecoat)를 수성으로 전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MOU) 체결('22.8)

*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CRM,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유니온화학공업, 조광페인트, KCC, PPG 등 총 9개사

** 한국페인트·잉크 공업협동조합 가입 업체 31개소 중 9개 업체 참여

제조일과 다르게 표시하여 재고품을 계속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사례⁷⁾가 발생함.

[자발적 협약서 세부 내용]

제2조 페인트 제조기업은 소비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비추천 신너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페인트의 유성 조색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도록 **2022년 8월 1일부터 유성 수지, 유성 조색제(메탈릭, 펄 조색제), 유성 베이스코트 Ready Mix도료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한다.**(다만, 수출품은 제외한다)

제3조 페인트 제조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라 페인트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제조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을 줄이도록 페인트 기술 개선에 노력한다. **페인트 제조기업은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유성 수지 및 유성 조색제(메탈릭, 펄 조색제)의 재고품이 대리점에 유통되지 않도록 2022년 8월 10일 까지 회수 등 조치한다**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판매하는 자 및 중간 유통자에게 도료의 용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해당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제조·수입일자를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표시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에

7) (용도표시 위반) 자발적 협약에 의하여 자동차보수용 유성 도료의 제조·공급이 금지되자 도료 제조사가 공업용 제품으로 표시를 위장하고 판매대리점에 자동차보수용으로 판매하도록 안내·교육한 사례
(제조일 위조) 유성제품 사용 근절을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을 강화하였는데, 이후 판매대리점에서 도료 제조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

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식품위생법」 8), 「화장품법」 9) 등에서도 외부 포장에 명칭, 제조에 사용된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8)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9)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 10. (생략)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제2항을 위반한 자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도료의 관리·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료의 제조·수입량 및 공급·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6항·제7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u>⑥ 환경부장관은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료의 제조·수입량 및 공급·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u>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설></u>	

[illegible]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 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및 도료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의 준수 여부-----.

현행	개정안
1. ~ 13. (생략) ② ~ ⑤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¹⁰⁾에서는 도료의 용도를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및 공업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도료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 현황]

(‘24.12월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제조·수입하는 자	공급·판매하는 자
4,035(100.0%)	231(5.7%)	3,804(94.3%)

*자발적 제출에 의한 자료로, 미응답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숫자임
자료: 환경부

10) **법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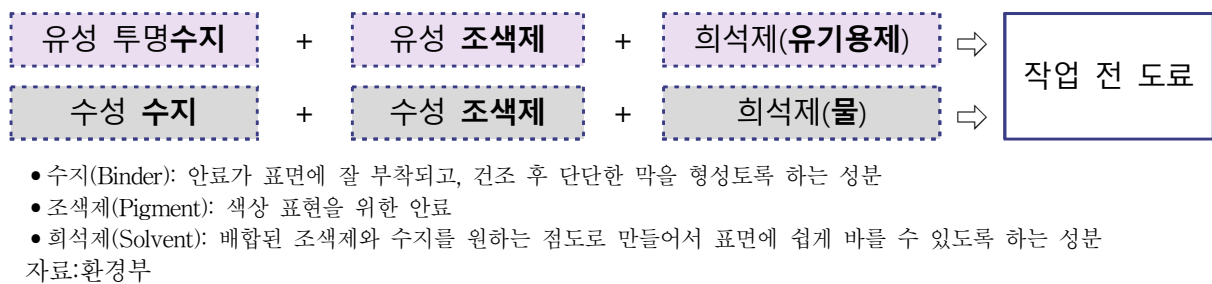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참고1)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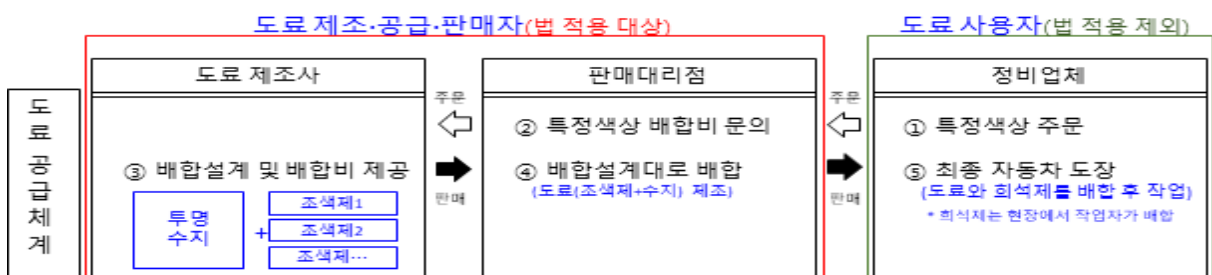
도료의 조색 방법을 살펴보면, 수지·조색제·희석제 성분을 배합하여 제조하고, 해당 성분들은 유성(기름 기반)과 수성(물 기반)으로 구분되는데, 서로 동일한 계열끼리 배합하여야만 도료가 균일하게 섞여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도료 조색 방법]



이 과정에서 수성 도료 대신 유성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료 제조사가 권장하는 도장사양서의 배합비와 다르게 배합하는 경우 도장사양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급·판매량과 실제 공급·판매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현행법에 공급·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정 사용 사례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동차보수용 도료 공급체계]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도료의 제조·수입량 및 공급·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 도장사양서의 배합비대로 유통되지 아니하고 있는 불법 제조를 적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료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자료

1.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19. 7. 16.>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 가. 용도 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부기준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35 이하
(2) 수성광택	70 이하
(3) 하도(下塗)	수성 30 이하, 유성 190 이하
(4) 퍼티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45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47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23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4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23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5) 스테인	수성 15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480 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	48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0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70 이하
(5) 유성 하도	550 이하
(6) 수성	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	35 이하
(2) 유성	3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150 이하
(3) 투명도료	5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540 이하
다) 상도-single	450 이하
라) 상도-basecoat	450 이하
마) 상도-topcoat	45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800 이하

3)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수성 도로표지용 도료	170 이하
나) 유성 도로표지용 도료	40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방오도료	500 이하
(2) 무독성방오도료	45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550 이하
(5)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
(6) 마감도료(2액형)	500 이하
(7) 발라스트(유니버설 프라이머)	400 이하
(8)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600 이하
나) 철구조물(강교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5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5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보수용은 63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530 이하
(8) 마감도료(수성)	150 이하
(9) 불소계 도료	580 이하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35 이하
(2) 수성광택	65 이하
(3) 하도(下塗)	수성 30 이하, 유성 180 이하
(4) 페티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41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42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17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2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17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42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5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43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5) 스테인	수성 10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460 이하
(2) 유성 상도 다액형	40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8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다액형	60 이하
(5) 유성 하도	480 이하
(6) 수성	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	35 이하
(2) 유성	1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50 이하
(3) 투명도료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사) 기타	
(1) 수성	180 이하
(2) 유성	2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	66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420 이하
다) 상도-single	420 이하
라) 상도-basecoat	200 이하
마) 상도-topcoat	42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680 이하
사) 기타	250 이하

3) 도로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도로표지용 도료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나) 도로포장용 도료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다) 기타	수성 150 이하, 유성 25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2) 방오도료	450 이하
(3) 무독성방오도료	4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0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45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45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450 이하
(8) 발라스트(유니버설 프라이머)	320 이하
(9)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550 이하
(10) 에칭 프라이머	750 이하
(11) 홀딩 프라이머	600 이하
(12) 바니쉬	550 이하
나) 중방식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3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3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0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4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보수용은 60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470 이하
(8) 마감도료(수성)	150 이하
(9) 불소계 도료	520 이하

다) 내열도료	650 이하
라) 내화도료	500 이하
마) 불연기자재용 도료	720 이하
바) PCM 도료	
(1) 고체(Solid) (안료함량 15% 이상)	800 이하
(2) 고체(Solid) 외(안료함량 15% 미만)	880 이하
사) 제관용 도료	
(1) 2PC(내면)	300 이하
(2) 2PC(외면)	500 이하
(3) 3PC/DRD/기타	880 이하
아) 기계 및 금속용 도료	
(1) 수성	200 이하
(2) 유성	750 이하
(3)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자) 목공용 도료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72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차) 전기·전자제품용(금속용) 도료	
(1) 하도용(메탈)	750 이하
(2) 하도용(유색)	750 이하
(3) 하도용(투명)	750 이하
(4) 상도용(메탈)	800 이하
(5) 상도용(유색)	800 이하
(6) 상도용(투명)	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카) 전기·전자제품용(플라스틱용) 도료	
(1) 하도용(메탈)	850 이하
(2) 하도용(유색)	850 이하
(3) 하도용(투명)	850 이하
(4) 상도용(메탈)	800 이하
(5) 상도용(유색)	800 이하
(6) 상도용(투명)	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타) 전기·전자제품용(기타소재용) 도료	890 이하
파) 자동차(신차)용 도료 (1) CLEAR (2) BASECOAT (3) 중도용 (4) 전착용(전기 도장용)	650 이하 수성 400 이하, 유성 800 이하 수성 400 이하, 유성 650 이하 100 이하
하) 자동차 부품용 도료 (1) CLEAR (2) BASECOAT (3) 특수기능도료(고휘도/반사용) (4) 프라이머 (5) 전착용(전기 도장용)	750 이하 750 이하 850 이하 800 이하 100 이하
거) 기타 (1) 수성 (2) 유성	200 이하 900 이하

- 비고: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